

## 21. 선고유예 형을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헌재 2002. 8.29. 2001헌마788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 14-2, 219>

###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건이다.

청구인 A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B는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재직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각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 당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해당되어 퇴직 당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으로 문제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기간(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와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한편,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당연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특히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1990. 6. 25. 89헌마22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한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헌법 제25조에서 위임한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는 이후 이 사건 지방공무원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국가공무원법 조항과 군인사법 조항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위헌 판단을 하였다(2002헌마684, 2003헌마293결정 참조).